

□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3(벽지 및 종이장판지) 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1.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벽지 및 종이장판지의 안전요건,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. 벽지란 실내의 벽 천정 등에 붙이는 종이제, 섬유제, 플라스틱제 및 금속박제 등의 것으로 접착제로 붙이는 것을 말하며, 제품의 한쪽 면에 점착제가 도포되어 있는 합성수지 재질의 <u>점착 시트(인테리어 필름)</u>를 포함한다. 종이장판지한 온돌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천연 소재로 만든 벽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 <p>2. 관련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. 이러한 관련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.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 <p>3. 안전요건 3.1 벽지 3.1.1 벽지는 표 1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.</p>	<p>1.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벽지 및 종이장판지의 안전요건,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. 벽지란 실내의 벽 천정 등에 붙이는 종이제, 섬유제, 플라스틱제 및 금속박제 등의 것으로 접착제로 붙이는 것을 말하며, 제품의 한쪽 면에 점착제가 도포되어 있는 합성수지 재질의 <u>점착 시트(인테리어 필름, 폼블럭 등)</u>를 포함한 다. 종이장판지한 온돌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천연 소재로 만든 벽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 <p>2. 관련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. 이러한 관련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. (현행과 같음) <u>KS M 1988 건축 내장재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</u> <u>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</u></p> <p>3. 안전요건 3.1 벽지 3.1.1 벽지는 표 1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.</p>	<p>- 폼블럭 벽지 적용 범위 포함</p> <p>- 추가적으로 인용되는 규격명 표기</p>

현행		개정안		개정사유						
표 1		표 1								
항 목	규 정	항 목	규 정	<p>- 벽지 내 중금속 및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안전기준 추가</p> <p>- 중금속 및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시험방법 규정</p>						
폼알데하이드방출량 (mg/L)	2 이하	폼알데하이드방출량	2 mg/L이하							
<u><신 설></u>	<u><신 설></u>	<table border="1"> <tr> <td rowspan="2">유해원소 함유량</td> <td>총 납(Pb)⁷⁾</td> <td>300 mg/kg 이하</td> </tr> <tr> <td>총 카드뮴(Cd)</td> <td>75 mg/kg 이하</td> </tr> </table>	유해원소 함유량		총 납(Pb) ⁷⁾	300 mg/kg 이하	총 카드뮴(Cd)	75 mg/kg 이하	총 휘발성유기화합물	4 mg/m ² ·h이하
유해원소 함유량	총 납(Pb) ⁷⁾	300 mg/kg 이하								
	총 카드뮴(Cd)	75 mg/kg 이하								
내 황 화 성	4 급이상	내 황 화 성	4 급이상							
난 연 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잔염시간 3 초이내 ○ 잔진시간 5 초이내 ○ 탄화면적 30 cm²이내 ○ 탄화길이 20 cm이내 ○ 접염횟수 3 회이상 	난 연 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잔염시간 3 초이내 ○ 잔진시간 5 초이내 ○ 탄화면적 30 cm²이내 ○ 탄화길이 20 cm이내 ○ 접염횟수 3 회이상 							
프탈레이트 가소제	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(DEHP), 다이부틸프탈레이트(DBP), 부틸벤질프탈레이트(BBP)의 총 함유량 0.1 %이하	프탈레이트 가소제	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(DEHP), 다이부틸프탈레이트(DBP), 부틸벤질프탈레이트(BBP)의 총 함유량 0.1 %이하							
비 고 1.~6.(생략)		비 고 1.~6.(현행과 같음)								
<u><신 설></u>		<u>7.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/kg 이하로 적용한다.</u>								
3.2 장판지(생략)		3.2 장판지(현행과 같음)								
4. 시험방법		4. 시험방법								
4.1 벽 지		4.1 벽 지								
4.1.1 시험의 일반조건~4.1.5 프탈레이트 가소제 시험방법(생략)		4.1.1 시험의 일반조건~4.1.5 프탈레이트 가소제 시험방법(현행과 같음)								
<u><신 설></u>		<u>4.1.6 총 납 함유량 시험방법</u>								
		<u>4.1.6.1 총 납 함유량 시험방법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부록 A, B에 따른다.</u>								
		<u>4.1.7 총 카드뮴 함유량 시험방법</u>								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4.2 장판지(생략)</p> <p>5. 검사방법~6. 표시(생략)</p>	<p><u>4.1.7.1 총 카드뮴 함유량 시험방법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부록 A, B에 따른다.</u></p> <p><u>4.1.8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시험방법</u></p> <p><u>4.1.8.1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시험방법은 KS M 1988에 따른다. 다만, 소형챔버법에서 시험용 챔버 공기 농도의 측정은 시험 시작 7일(168 시간 ± 2 시간)째에 포집하여 실시한다.</u></p> <p>4.2 장판지(현행과 같음)</p> <p>5. 검사방법~6. 표시(현행과 같음)</p>	